

18,9세기 과거제 문란과 부정 행위

- 『무명자집』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 규 필**

<目次>

I. 들어가는 말	V. 채점과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의
II. 시관의 부패와 사전 거래	농간
III. 과장에서의 부정행위	VI. 부정의 주변 풍경
IV. 시지 제출과 收券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VII. 맺음말

<국문 초록>

본고는 18,9세기에 과거제와 과장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부정행위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유형별로 고찰하면서 실제적인 양상에 접근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양반층의 비대화와 저속화가 과거에서 경쟁률 상승과 맞물리면서 제도의 문란을 부추겼다. 18세기에 이르면 과거 제도가 문란해지고 시관의 자질이 극도로 저하되었다. 뇌물과 청탁이 횡행하였으며, 사전에 문제가 유출되거나 합

* 이 논문은 성균관대학교 번역거점연구소에서 『무명자집』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부정행위 양상을 정리한 것으로 강민정, 김채식, 이상아 연구원의 번역에 큰 도움을 받았음을 밝힌다. 인용된 번역문들은 논자가 필요에 따라 윤색한 것으로, 논문에 오역이 있다면 전적으로 논자가 윤색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gdfeel@hanmail.net

격자가 미리 내정되었다. 시험이 시작되면 응시생들은 자리싸움, 교란 행위를 통한 컨닝, 대리 시험, 조직적인 탐을 이루어 시험지 작성하기, 응시 장소를 바꾸어가며 응시하기, 시험지 바꾸어 내기, 과거장 밖에서 시험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등 온갖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시험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는 試官과 결탁하여, 암호를 주고받거나 청탁자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인지시켜 합격을 종용하거나, 비봉을 바꿈으로써 남의 합격을 가로챘다. 과거가 끝난 뒤에서 試官을 매수하여 시험지를 묶음 단위로 교체하거나 성적을 조작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결과를 유출하여 당락을 재조정하기도 하였다.

이 수많은 부정에는 시관만 개입된 것이 아니라, 가난한 문인, 서리와 균졸, 액례와 노복들까지 관련되어 있었다. 요컨대 18,9세기 과거장은 시험 고지에서 합격자 발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시관과 사대부가는 물론 하인 배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이 부정의 끈으로 복잡다단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윤기가 남긴 과장의 부정행위 행태는 그 자체로 당시 양반 사회의 이면을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 리포트이거니와 동시에 향후 19세기 관료 사회의 모순을 미리 내다보는 창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과거제 문란, 뇌물과 청탁, 합격자 내정, 부정행위, 성적 조작과 당락 조작

I. 들어가는 말

윤기는 젊은 시절 과거에 합격했다가 까닭 없이 罷榜 당하였다. 한미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같은 당색이었던 남인 주류로부터도 끊임없이 배척당했다. 소외는 윤기에게 상처와 함께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선물했다. 예리한 칼날처럼 당대 양반 사회의 타락상과 고관들의 비리를 거침없이 파고들었다. 상상을 넘는 천태만상은 그야말로 진풍경인데, 꺾어진 묘사에는 그의 유별난 기록력과 남다른 문장력도 기여가 적지 않았으리라

집작한다.¹⁾

본고에서는 그 가운데 과장의 부정과 관련한 기록들을 모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윤기는 과거제도의 부정과 특히 관심을 기울여 「과설」이란 이름으로만 4편의 글에 남겼고, 이 외에도 「論科擧」, 「科說」, 「科弊」, 「科儒雜徭」 등 다수의 詩文 속에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신랄하게 질타하였다.²⁾

과거는 관료제 사회인 조선에서 인재의 발탁과 공급에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한 제도로, 국가의 성쇠와 정치의 성패를 결정하는 관문이다. 동시에 관료로 진출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었기에 이를 둘러싼 부정과 잡음은 어느 시대나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과거제는 항상 당대 지식인들의 첨예한 관심을 받았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부패의 정도가 심해져 星湖와 茶山을 비롯한 經世의 지식인들이 관련 폐단을 여러 차례 지적하기도 했다.³⁾

학계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이 적지 않아 진작부터 선행연구가 있었다.⁴⁾ 2000년대에 접어들어 학계는 조선시대의 맨얼굴 또는 가려져왔던

이면의 풍경에 관심을 가져왔다. 고전 독자 일반에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학계의 연구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상에 발을 딛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도 커다란 의의와 성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과거제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근래의 선행연구도 이런 연구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⁵⁾ 다만 재미있는 몇몇 일화를 뽑아 흥미 위주로 소개하는 정도에 그쳐, 유형별로 정리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고는 18,9세기에 과거제와 과장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부정행위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유형별로 고찰하면서 실제적인 양상에 한층 가까이 접근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한 개인의 문집에 기록된 것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제의 부정부패의 사례가 특정 개인의 시각에서 단순 가십 거리로 소개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9세기 후반 매관매직 등 관료제 사회의 총체적 부패를 이해하는 단초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만큼 『무명자집』에 채집되어 있는 부패상은 다양하고 적나라하다.

II. 시관의 부패와 사전 거래

1. 과거제 문란과 시관의 자질 저하

종언을 고할 때까지 조선조가 고수한 신분제는 良賤制였다. 논리로만

의 과거제 개혁론 등을 고찰하거나 탕평파에 대한 연구와 연관 지어 논의되었다.(李洪烈, 韓永愚, 李秉杰, 한우근, 천관우 등) 이 부분은 이이나, 「영조대 과거제 운영의 폐단과 그 대책론」(국민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에 정리된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논문 pp.1-2. 참조.

5) 과거제 부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좁혀 말한다면, 강명관의 『조선의 뒷골목 풍경』(푸른역사, 2003.)과 안대희의 『선비답게 산다는 것』(푸른역사, 2007.)을 들 수 있다.

1) 윤기의 생애와 관력에 대해서는 김병건, 『무명자 윤기 연구』, 성균관대출판부, 2012.; 이규필, 「무명자 윤기의 의식세계 고찰」, 『대동한문학』 36집, 대동한문학회, 2012. 참조.

2) 과거제도 및 부정행위와 관련한 윤기의 글은 대략 다음과 같다. 문고5 「論科弊」; 문고6 「家禁」; 문고 11 「科說」 12조; 문고 12 「峽裏閒話」, 「後科說」 3조; 문고 13 「峽裏閒話」, 「科說」 6조, 「科說II」; 문고14 「記丙戌重試事」, 「記甲申科事」.

3) 星湖는 「論科擧」와 「論科擧之弊」라는 글을 통해 당시 드러난 문제점과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였고, 茶山은 『경세유표』 「科擧之規」에서 과거제 폐단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4) 과거제와 관련한 90년대까지의 연구 흐름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먼저 과거의 제도적 운영에 초점을 둔 연구로 고시방법과 절차 등을 다룬 연구가 있었고(朴天主, 曹佐鎬, 李成茂, 李俊浩), 법전 조항을 중심으로 문과제도의 변화거정을 정리한 연구도 진행되었다.(車美姬) 신분제와 관련하여 응시 자격을 살핀 연구가 있었으며, 급제자 분석을 통해 집권세력의 성분과 형성을 밝혀내기도 했다.(宋俊浩, 車美姬) 마지막으로 실학과 관련하여 영정조대

따지자면 양반은 ‘양민 중 文武班에 오른 사람’일 뿐 신분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4대 이하 과거 급제자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평범한 양민이 된다.

현실에서 이 논리가 지켜진 것은 물론 아니었다. 이로 인해 양반의 수는 급격히 늘었다. 비대화는 필연적으로 저속화를 부른다. 양반층의 비대화와 저속화가 과거에서 경쟁률 상승과 맞물리면서 제도의 문란을 부추겼다. 18세기에 이르면 小科의 경우는 제도가 거의 유명무실화 되다시피 했는데,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初試를 통과하지 않고 會試에 응시하는 경우이다. 이것도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초시를 보지 않고 곧장 회시를 보는 유형이 있다. 또 초시에 떨어졌음에도 돈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 시관과 협잡하여 회시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유형이 있다.⁶⁾

둘째는 타인의 초시 합격방을 사서 會試에 응시하는 경우이다. 鄉榜의 초시에서 같은 姓을 가진 사람의 합격방을 사서 그의 이름으로 회시를 보는 속임수가 頻發했는데, 정작 회시 과정에서 시험을 칠 때에는 본인의 이름으로 써서 내었다. 점점 문란해져 나중에는 아예 성이 다른 사람의 합격방까지 사서 응시하였고, 학강례가 끝난 뒤에는 버젓이 본인의 이름으로 응시하였다. ‘아비를 고치고 할아버지를 바꾼 짓’⁷⁾이란 질타는 이것을 가리킨다.

셋째는 소과 陳試 제도의 문란이다. 陳試는 초시에 합격한 사람이 부모상을 당해 회시에 응시할 수 없거나, 父子가 같이 참여하게 되어 피해야 할 경우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제도이다. 이 때 해당 사유를 예조에

고하고 陳試狀을 받아 增廣試나 式年 회시에 응시한다. 그런데 통상 100명을 넘지 않던 진시 응시자가 점차 불어나 윤기 당시에는 700명을 웃돌았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초시를 거치지 않고 진시에 바로 응시하는 수가 늘어나서이고, 또 하나는 회시에 떨어진 후 편법을 써서 재응시하는 사람이 적체되어서이다.⁸⁾ 진시장을 허위로 낼 경우 10년 동안 과거에 응시할 수 없는 강력한 제제가 있지만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결국 예외적인 경우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제도가 편법의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시관의 자질 저하도 과거 제도의 급격한 문란에 한 몫 했다. 시제가 ‘登泰山小天下’에 ‘小’자를 압운자로 뽑은 시험장이 있었다. 장원한 시지에는 ‘小’의 운에 맞추어 ‘荷篠’라는 말로 압운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篠’와 ‘篠’의 차이인데, ‘荷篠’라고 해야 옳고 ‘荷篠’라고 해서는 안 된다. 또 ‘篠’는 거성 ‘嘯’ 운에 속하고 ‘小’는 상성 ‘篠’ 운에 속한다. 유생은 글자의 차이와 운통을 모르고 있었고, 시관은 응시생의 실력을 가늠할 수 없었던 것이다.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진 시관의 안목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예이다.⁹⁾

시관의 자질 저하는 眼目과 文識의 저하만이 아니었다. 근무태만과 직무유기로 곧장 이어졌다. 앞에 약속한 초시 합격방의 錄名과 관련해 서도 합격 여부를 꼼꼼히 조사하지 않은 시관의 근무태만이 사실상 제도 문란을 초래한 根因이다. 더 나아가 관리 소홀로 試券을 잃어버린 사건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시관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채 시권을 찾

6) 尹椿, 『無名子集』 문고13, 「峽裏閒話 科弊」, “又有無初試而公然呈出陳試公文自稱陳試 輒赴會試 誰復考覈其初試之有無乎” 문고12 「峽裏閒話」, “又有錢有勢者 雖未得初解 亦觀會試取生進 而人不知如何弄奸云 良可歎也”

7) 尹椿, 『無名子集』 문고13, 「峽裏閒話 科弊」, “前則鄉曲有錢者 買鄉榜中姓同者之初試 仍以其名觀會試 此已是改父易祖 而今則不必姓同 雖他姓亦買之 以其姓名越學禮講 及其入會場 則以己之姓名書之 雖入格 誰復考驗初試榜之有無乎 縱有知者 亦誰發之”

8) 尹椿, 『無名子集』 문고13, 「峽裏閒話 科弊」, “前則陳試者多不過百數 今則爲七百餘人 此無他 前有一初試則與下輩符同 若見落於會試 輒又陳之 故有以一初試 終身入會場者 新陳舊陳 相仍不已 而至於此多也”

9) 尹椿, 『無名子集』 문고12, 「峽裏閒話 每經一科」, “科後客有過者 偶袖二所詩 魁騰出者 故見之則題是登泰山小天下 押小字 而不知篠篠之異 乃以荷篠押韻 可謂荷篠儒生 亦可謂荷篠試官 又其中一句曰斜陽徙倚玉女峯 吾聞華山有玉女峯 未聞泰山亦有之也 儒生之無識雖如此 試官之擢爲壯元 豈不駭然乎 二所科作既如此 一所亦安知無可笑乎 摠之欲塞耳無聞也”

아주지 않아 유생이 끝내 시권을 제출하지 못하였다.¹⁰⁾

2. 시험 전의 뒷거래와 試題 유출

자질 저하는 성실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도덕성의 붕괴였다. 뇌물과 청탁의 만연은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합격자를 예견할 수 있게 만들었다.¹¹⁾ 이로 인해 방이 발표된 뒤에는 ‘아무는 아무의 친인척이고, 아무는 아무에게 청탁하였다더라. 아무는 아무의 자질과 同接이라더라.’는 따위 뒷말이 분분하기 짝이 없었다고 전한다.¹²⁾ 당시의 광경을 윤기는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試士秉黜陟 과거에서 당락의 권한을 권 이가
自謂無一私 스스로는 한 점 사심 없다 하지만
銅臭與關節 구린내 진동하고 뇌물 행횡하니
畢竟焉能欺 끝내 어이 속일 수 있을까¹³⁾

뇌물을 받은 시관에게 제일 손쉬운 거래는 시제 유출이다. 문제를 얻어낸 응시생은 문장에 능한 사람에게 맡겨 과문을 미리 작성해 외워 놓았다가, 과장에서는 그대로 쓰면 된다. 수준과 완성도 면에서 즉석에서 이루어진 문장보다 뛰어난 것은 뻔한 일이므로 합격 가능성이 자연 높아진다.

10) 尹楮, 『無名子集』 문고14, 「記丙戌重試事」, “又聞年前監試覆試 入場後收券還給之時 有失券者 而試官無意推給 儒生竟不得製呈云”

11) 尹楮, 『無名子集』 문고5, 「論科舉」, “於斯時也 只隨其科之主試何人而可以預知其榜 但見其人之親密何處而可以坐待其捷 以故科期在近 則凡爲儒生者 晝夜奔走 或鑽刺蹊逕 或誘脅文筆”

12) 尹楮, 『無名子集』 문고6, 「家禁」, “以故榜出之後 則謗議喧然以爲某是某之姻親知舊也 某是某之請囑也 某是某子姪之同接也 某是入錢幾許者也 某是誤中副車者也 千奇百怪 不勝紛紛”

13) 尹楮, 『無名子集』 시고4, 「謾興」.

講經과 같은 경우 외위야 할 大文을 미리 약속해 놓으면 되므로 그나마 쉬운 편이었다.¹⁴⁾ 보다 변수가 많은 것은 아무래도 製述이었다. 윤기가 성균관에 있을 때 九日製의 御題가 외부에 유출된 일이 있었다. 유생들이 미리 써간 시지를 한꺼번에 바치는 바람에 대청 위로 올라가 서로 밀치는 소동이 한바탕 일었다. 윤기는 이 이수라장을 “승지는 돌에 부딪쳐 머리가 깨졌고, 提學은 도포가 찢기고 官帽가 땅바닥에 떨어졌으며, 대사성은 허겁지겁 달아나 그 몰골이 경악스러웠다.”고 적고 있다.¹⁵⁾ 이 야단법석의 와중에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내걸린 御題가 “九月築場圃”였다. 그런데 응시생 중에는 “九月授衣”로 써서 들어갔다가 시제가 걸릴 때 ‘九月’이란 첫 두 글자를 보자마자 서둘러 시권을 바친 자가 많았다.¹⁶⁾

본래 시제가 ‘九月授衣’로 정해졌고 이것이 유출되었는데, 과거 당일 시제가 내 걸리기 직전 ‘九月築場圃’로 바뀌었다. 그런데 시제가 바뀐 줄을 모른 유생들이 첫머리 두 글자만 보고 미리 작성한 답안을 서둘러 써서 제출했던 것이다. 시제 유출 정황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3. 합격자 내정과 배분

시관으로 하여금 부정을 저지르게 하는 요인으론 뇌물 외에도 당파 의식이 큰 작용을 했다. 숙종조에 일어난 己卯科獄 역시 시관이 自黨의

14) 尹楮, 『無名子集』 문고5, 「論科舉」, “至於京儒則雖號曰治經 日以遊戲爲事 鮮有篤其業者 而臨科則奔走於當爲試官者之家 預約七大文”

15) 尹楮, 『無名子集』 문고13, 「科說」, “御題已傳播於外 皆書諸試紙而入 只待懸題 一齊悉呈 諸生皆騰上廳上 推排墮突 大擾極亂 承旨頭爲石擊 提學裂袍落帽 泮長蒼黃逃避 景象駭愕”

16) 尹楮, 『無名子集』 문고13, 「科說」, “御題乃九月築場圃 而或誤以九月授衣書入 及其懸題 只見九月二字 急急呈之者多云 可見此時士習之悖亂 法紀之蕩然也”

인물을 무리하게 합격시키려다 커진 사건이었다. 정조와 순조 시대에는 이러한 사례가 정계에 고질화되어 깊이 뿌리박았다. 장원으로 합격하고도 파방 당한 윤기의 경우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은 (중략) 가슴속에 미리 四色 당파를 배분한다. 승보시의 정원 10인 가운데 아무 당파에 4, 5 자리를, 아무 당파에 3, 4 자리를 내주고, 아무 당파와 아무 당파에는 각각 한 자리씩 준다. 사학합제의 정원 16인 가운데 아무 당파에 7, 8 자리를, 아무 당파에 6, 7 자리를 내주고, 아무 당파와 아무 당파에는 각각 한 자리씩 준다.¹⁷⁾

시관들의 당파가 다를 경우 권력의 지분만큼 당파의 합격자 명수를 배당할 수밖에 없었다. 숙종조 이후로 백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므로 조정하고 타협하는 문화가 그간 정착된 것이다. 그러므로 시관이 특정 당파 일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론과 후환을 염려해 독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¹⁸⁾

관행이 기형적으로 고착화되면서 특정 당파나 지역 출신의 응시 유생을 완전히 배제하는 결과를 불러오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로 과거 응시생 800명 가운데 영남 사람 전원이 낙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격분한 영남 사람들은 임금의 행차 앞에 上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너무 화

17) 尹椿, 『無名子集』 시고2, 『洋中雜詠』에는 “대사성이 老論이면 초시 합격 자격을 부여받는 10인 중에 노론이 가장 많고, 少論이 그 다음이며, 小北과 南人에게는 각각 한 자리씩 주어 합격 정원을 채운다. 대사성이 소론이면 소론이 가장 많고 노론이 그 다음이다.”라는 구체적 실상이 첨기되어 있다.

18) 이는 단순히 과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과거 후에도 합격자를 三館-承文院, 成均館, 校書館-에 차등을 두어 출신별로 우열을 낙인찍고, 홍문록에 넣어 문벌가의 현달한 지위로 못을 박는다. 이때도 역시 색목에 따라 분배하고 뇌물 청탁의 정도에 따라 뽑아주거나 외면하였다. 과거 문제가 이후에 이어질 환로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는 증좌이다. 尹椿, 『無名子集』 문고5, 『論科舉』, “今設一科 則必爲分館 以印其地處之優劣 又爲弘錄 以軻其貴勢之華靡 其於弘錄也通清也 又分排色目 若升學之爲 而隨其圖囑之緊歇 以爲黜陟之地 何嘗論其人之行與才乎”

가 나 ‘嶺南儒生 從此廢科[영남 유생은 앞으로 과거에 응시하지 않겠다.]’는 글을 南門에 써놓기도 했다고 한다.¹⁹⁾

시관에게 있어 색목이나 뇌물청탁자보다 우선인 합격 대상자가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 말할 것도 없이 자신의 자제이거나 一門의 피붙이일 것이다. 시관의 자제가 과거에 합격하는 것은 당연시되었다. 하지만 자신이 주관하는 試場에서 직접 합격시켜주는 정도까지 형편없지는 않았고, 대신에 시관들끼리 그 자제들이 응시할 때 상대방을 시관으로 추천하여 상호 합격시켜주는 편법을 썼다.

場分一二試分員	일장 이장 나누고 시관도 정원 나누어
子弟觀光每互遷	자제들 응시할 때 매양 서로 추천하네
比及榜時無不得	창방할 때 보면 모두 급제해 있으니
苟非換手詎能然	손 바꾼 게 아니라면 어찌 그럴 수 있으랴 ²⁰⁾

甲의 자제가 응시할 때에는 乙을 시관으로 추천하고, 반대로 乙의 자제가 응시할 때에는 甲을 시관으로 추천하여 서로 합격시켜주는 형식이다. 갑과 을의 자제가 동시에 응시할 때에는 甲이 주관하는 一所에 을의 자제가 응시하게 하고, 乙이 주관하는 二所에 갑의 자제가 응시하게 하여 합격시켜주는 것이다.²¹⁾

이렇게 되면 당색이 다른 관원이라도 무조건 으르렁대기만 할 수는 없고 교묘한 유대관계로 결탁할 수밖에 없다. 당파를 막론하고 주요 별열가에서 과거 합격자 배출은 물론이고 청요직을 돌려가며 차지하는 힘이 여기에 있었다.

19) 尹椿, 『無名子集』 문고13, 『科說』, “嶺南之人 幾不免全落於八百人之中 乃大忿恚 或因動駕上言 或携牛骨見大臣 示其誓不應舉之意 或書嶺南儒生從此廢科八字於南門”

20) 尹椿, 『無名子集』 시고4, 『科儒雜語』.

21) 尹椿, 『無名子集』 문고11, 『科說』, “故一所試官之子弟 必擢於二所 二所試官之子弟 必捷於一所 俗謂之換手 是何異於自科其子弟乎”

Ⅲ. 과장에서 부정행위

1. 자리싸움

19세기로 접어들면 일반 양민의 자제로서 초시에 응시하는 자들이 폭증한다. 『무명자집』의 「과설」에는 정조 24년(1800) 3월 정시에서 경향에서 몰려든 거자 유생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농부나 초동, 목동까지 몰려들어 (중략) 시험장을 3개소로 나누었음에도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여 응시생들이 모두 여염집 지방 위로 올라갔다.²²⁾

규제가 해이해지자 신분 상승의 욕망에 민간의 자제들까지 대거 과거에 응시하였다. 영·정조 이후 지방 유생의 합격률을 높이려는 조정의 배려도 한몫 거들었다. 실록에 기록된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이해 3월 21일 정시 초시 응시자가 11만 1,838명이고 거둔 시권은 3만 8,614장이었으며, 22일 응시자가 10만 3,579명이고 거둔 시권은 3만 2,884장이었다고 전한다. 여기에 무과 3만 5,891명이 더해졌다. 이틀에 걸쳐 25만명이 넘는 인원이 과거에 참여했고, 거두어들이는 시권만 7만장을 상회한다.²³⁾

22) 尹椿, 『無名子集』 문고13, 「科說」, “今秋設庭試初試 京鄉之人 無不公然生慾 鋤耨者樵牧者 舉皆塗集 以故雖分三所 亦多死傷 諸生皆登閭闔之屋上 其多可知 其亂可知”

23) 『正祖實錄』, 24년 3월 21일조, “文一所 設於禮曹 通中樞府 北至於光化門外 南至於京兆府前路 設布爲城 入門三萬二千五百九十八人 收券一萬三千七百三十七張 二所設於丕闈堂, 東至於大成殿門外 南至於香橋 入門三萬九千八百七十人 收券一萬五百二十二張 三所設於明倫堂 東至於食堂橋 北至於碧松亭 與二所並用布城 入門三萬九千三百七十人 收一萬四千三百五十七張 三所入門合十一萬一千八百三十八人 券三萬八千六百十四張 武一所 設於訓練院 入門一萬一千五百九十一人 二所設於慕華館 入門一萬五十人 三所設於南小營 入

거자 유생에 딸린 부속 인물들까지 고려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과장 주변에 몰려든 셈이다. 당시 서울 인구가 20만명을 상회하는 정도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²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인파였다. 자빠지고 짓밟혀 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 북새통에서 몸을 피하기 위해 일부 유생들이 여염집의 지방위로 올라갔다는 『무명자집』의 기록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실록이 증명해 준다.

아비규환과 같은 과장에서 유생들이 처음으로 저지르는 부정행위는 자리싸움이다. 앞자리를 차지하면 시제가 걸릴 때 남 먼저 보아 시권을 빨리 작성할 수 있고, 무엇보다 시권 작성과 제출 과정에서 남모르게 다른 부정을 행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 행위가 합격과 직결됨은 물론이다. 다산의 『경세유표』에는 당시 경화자제들의 자리싸움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응시하려는 권세가의 자제는) 壯士를 모집하고 無賴漢을 모은다. 이들은 先接軍이라 한다. 이들은 나무나 대나무를 깎아 창을 만든다. 우산대엔 끝에 쇠를 박고, 장막에 꽂힌 서까래는 날카롭게 깎았다. 등에 거적을 지고 허리에 새끼를 동여맨 채 등을 들고 깃발을 세워 유생을 호위한다. 번득이는 눈은 통방울 같고 거친 주먹은 돌이 나는 듯하다.²⁵⁾

몇 줄의 글에 거친 폭력성이 생생하다. 京官도 겁을 먹고, 禁官도 꿈무니를 뺄 만큼 자리싸움은 치열했다. 연암이 이웃집 유생의 과거 합격

門一萬四千二百五十人 三所入門合三萬五千八百九十一人”; 22일조, “入門十萬三千五百七十九人 收券三萬二千八百八十四張”

24) 1798년(정조22, 무오) 12월 30일 한성부에서 보고한 백성들의 호구 수는 서울의 경우 44,945가호에 193,783명이고, 경기의 경우 161,772가호에 662,992명이었다. 『정종실록』 22년 12월 30일 기사 참조. 공식적인 통계이므로, 통계에 잡히지 않은 계층이나 누락된 인물들을 감안한다면 이를 상회하리라 추정된다.

25) 丁若鏞, 『輿猶堂全書』, 「經世遺表 鄉試藁言」, “召募壯士 招集無賴 名之曰先接之軍 刻木爲槍 削竹爲稍 雨傘之椎 鐵嵌其頭 芟舍之椽 刀網其尖 負苫帶索 擎燈舉旗 怒目鈴突 轟拳石飛”

에 “열에 아홉은 죽거나 다치는 그 위태로운 장소에 다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오.”²⁶⁾라고 던진 말이 너스레가 아님이 피부로 이해된다.

과거 당일 아침에 벌어지던 자리싸움은 경쟁이 높아지자 점점 시간이 앞당겨져 하루 전에 이미 과장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권세가의 자제가 試卷을 들고 가면 선점꾼 수십 명이 그를 따라 미리 과장에 들어가 목었다. 권세가 이만 못한 사람은 과장 문을 열 때 뒤에 있는 담장으로 넘어 들어가고, 권세가 제일 못한 사람만 정문으로 들어갔다.²⁷⁾

이것도 모자라 일부 유생들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지 않고 울타리를 불태우고서 들어가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싸우는 바람에 사상자가 생기기까지 하였다.”²⁸⁾ 과거장을 흔히 棘圍라고 한다. 질서를 바로잡고 출입을 금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가시울타리를 둘러 세워 국법의 엄함을 보였던 것인데, 자리싸움으로 인해 나라에서 세운 가시울타리를 태워지기에 이르렀다. 문란해진 국법을 이보다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어렵다.

2. 옷 바뀐 입기와 借述

כות속에 巾 종이를 숨기는 義盈庫, 붓 대롱에 작은 종이를 말아 숨기는 挾書, 책을 끼고 가는 挾冊, 답안지를 땅에 떨어뜨려 보여주는 落紙, 눈을 굴려 남의 답안지를 베끼는 顧盼, 옆 사람에게 물어보는 說話 등등

26) 朴趾源, 『燕岩集』 卷5, 「映帶亭贈墨 賀北鄰科」, “暗慶其不復入十分九之危場也”

27) 尹椿, 『無名子集』 문고12, 「峽裏閒話 每經一科」, “一人操券 數十人隨從 預宿場中 其不及於此者 開門時從後垣踰入 最無勢者 乃從門入”

28) 尹椿, 『無名子集』 문고12, 「後科說」, “甲戌春 又設癸酉式年科 益聞前所不聞 士習之乖悖 試官之無嚴 令人駭心而瞪眼 未知此世界將作何等景象而後已耶 監試初試時試官之入場也 儒生充塞門路 不能入 至從後門闖入 儒生不待開門 焚棘圍以入 爭先占要地 相關至死傷 此火賊之事也 苟有畏法顧身之心 豈如是乎”

의 부정행위는 선행연구를 통해 대중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 오늘날 소위 巾寧에 해당하는 이런 부정행위를 赫蹄라고 한다.

위와 같은 단순 부정행위는 『무명자집』에 거의 보이지 않고, 대신 과장의 담을 넘어 출입하면서 글귀를 베끼는 과감한 행위들이 등장한다. 시관은 과장 출입을 통제하고 부정출입자를 색출해야 하지만 형식적으로 새끼를 쳐들 뿐이었다. 윤기는 이를 ‘명분을 위한 쇼’²⁹⁾이라고 비난하였다. 이것도 순진한 수준이고, 나중엔 버젓이 接이라는 틈을 짜서 부정을 행하였다.

가장 간소한 형태가 과거장 울타리 밖에서 불러주는 글귀를 안에서 받아 적는 정도였다. 조금 더 과감한 부정행위가 있다. 권세가의 자제가 집안의 僮卒輩들을 데리고 과장에 들어가는데, 검졸배들이 儒巾 하나씩을 지니고, 응시생은 또 각각 氈笠 하나씩을 지니고 함께 과장에 들어간다. 그리고는 수시로 옷을 바꿔 입고 시관의 눈의 속여 과장을 누비면서 巾寧을 하는 것이다.³⁰⁾

틈을 꾸러 행하는 부정행위의 최고 형태는 借述이다. 응시자가 자신을 도와줄 틈을 짜서 들어가 그들로 하여금 시권을 작성하게 한 다음, 자신이 제출하는 것이다. 적발 규정과 감독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권세가의 자제는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³¹⁾

이 때문에 시험 날짜가 가까워지면 권세가의 응시 유생들이 밤낮으로 분주히 다니며 연줄을 타고 청탁을 넣기도 하고 문장력으로 이름 있는

29) 尹椿, 『無名子集』 문고11, 「科說」, “今之科擧 直是以虛名爲戲劇耳……今科監會既入場 試官令懸索於庭 呼名越之 蓋欲覈攔入 而及其盡點 餘者尙多 則宜若盤詰 而遂置不問 然則初命越索者何也 是以防攔入之名而爲戲也 又不問外場之見捉者 而使卒呼之曰今番多外場 須勿爲之 是禁外場之名而爲戲也”

30) 尹椿, 『無名子集』 문고12, 「後科說」, “又戴儒巾者 多在廳上 雜亂橫行 僮卒輩各持一儒巾 儒生各挾一氈笠 蓋欲隨時變服作奸也”

31) 尹椿, 『無名子集』 문고5, 「論科擧」, “近來法禁中 若借述借書 隨從挾冊之類 每科紛紜者 皆欲令有腹筒者自作自書 而無才者不得售其奸也 然而何嘗有恪謹從令 秋毫無犯者乎”

사람을 피거나 위협하기도 한다. 문장력이 있는 자들은 예외 없이 권력에 굴종하고 재물의 유혹에 넘어갔다.³²⁾ 문장에 자신이 없는 응시생은 글을 빨리 짓는 사람과 글씨를 빨리 쓰는 사람을 미리 매수해 둔다. 이들과 함께 시험장에 들어가 빨리 써내게 해서 남들보다 먼저 제출하려고 다룬다. 이때 글을 짓는 사람을 巨擘, 글씨를 쓰는 사람을 寫手라고 한다.

19세기에 와서는 이게 심해져 심지어 두세 사람의 거벽이 한 편을 짓고 두세 사람의 사수가 한 장의 시권을 썼다. 말하자면 몇 사람의 거벽이 팀을 이뤄 초안을 작성하고, 몇 사람의 사수가 팀을 이뤄 분담하여 글씨를 써서 하나의 시권을 작성하는 것이다. 借述의 방법이 점점 세분화되고 대규모화 된 것이다.³³⁾

借述이란 부정행위가 점점 진화하게 된 것은 早取라는 관행 때문이었다. 試官들은 늘어난 응시생의 시권을 일일이 읽을 수 없게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먼저 제출한 시권을 합격시켜주는 관행이 생겼다. 이것이 초취이다. 전술한 ‘7만장을 상회하는 시지’를 상상해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응시자들은 최대한 빨리 시권을 작성해야 했고, 이 때문에 借述의 부정행위는 점차 조직화 대규모화 되었다. 응시생들 역시 기를 쓰고 제1축이나 제2축에 끼이도록 제출하려 갖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부모 형제와 다른 사람들도 문장이 어떤지는 따지지 않고 오직 답안지 제출 시점만 물어보고 당락을 점쳤다고 한다.³⁴⁾

32) 尹椿, 『無名子集』 문고5, 「論科擧」, “以故科期在近 則凡爲儒生者 晝夜奔走或鑽刺蹊逕 或誘脅文筆 其有文筆者 又多爲貴勢所奪 貨利所引 其當爲試官者 左右尋覓 或約結姻親 或延攬錢帛”

33) 요컨대, 과거를 위해 접을 꾸리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리싸움을 위해 꾸리는 경우, 시선을 교란시켜 조직적으로 컨닝을 하기 위해 꾸리는 경우, 차술을 하기 위해 꾸리는 경우이다.

34) 尹椿, 『無名子集』 문고5, 「論科擧」, “而無文筆者 預備速製速寫之手 於其入場也 忙忙寫出 競欲先人 甚至於以數三人合作一篇 以數三人合寫一張 期於早得

3. 대리시험과 試所 바꾸기

赫蹄와 借述은 적어도 응시자 자신이 과장에 들어가서 저지르는 부정이다. 그런데 아예 응시자 자체를 바꾸어서 시험을 보게 하는 부정도 저질러졌다. 그것이 代寫, 바로 대리시험이다. 그런데 그 정상이 심상치 않다.

전에는 남을 대신 들여보내는 경우 돈을 미리 썼다 하더라도 탄로가 날까 두려워하였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이 보는데도 뻔뻔스레 고개를 들고 들어가니, 보는 사람도 그저 웃을 수밖에 없다.³⁵⁾

윤기의 고발을 보면 대리시험마저도 이미 만연한 부정이다. 처음에는 대리시험의 정황이 탄로날까 조심했는데, 19세기에 이르면 대리시험 사실을 굳이 숨기지도 않고 공개적으로 부정을 저질렀다. 이 뻔뻔함이 도를 지나쳐 응시생이 대리자와 함께 과거장에 들어가, 대리시험을 감독하기에 이르렀다. “전엔 정원보다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남을 대신 들여보낼 경우 당사자는 감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지금은 더 들어가는데도 아예 제지하는 자가 없어 수수방관하면서 손가락질할 뿐이다.”³⁶⁾는 윤기의 전언엔 실소를 넘어 절망이 느껴진다.

사람을 바꾸는 대리시험 외에 試所 자체를 바꾸는 부정도 행해졌다. 응시생이 자신이 사는 행정구역의 試所에서 시험을 쳐야 함에도, 평소 친분이 있거나 뇌물을 들여 청탁한 시관이 다른 시소의 시험을 주관하

第一軸第二軸 不然則自以爲不善修人事 其父兄與他人 亦不問其文之如何 惟問其呈之早晚 以占得失”

35) 尹椿, 『無名子集』 문고13, 「峽裏閒話 科弊」, “前則代入者雖入錢 惟恐或露 今則萬目所覩 昂然而入 見者笑之而已”

36) 尹椿, 『無名子集』 문고13, 「峽裏閒話 科弊」, “前則或恐窻外之生事 至於代入充數 而渠則不敢入 今則公然加入 蕩無防閑 徒有傍觀之指點”

면 그리로 가서 응시하여 합격하는 부정이다.

試官을 따라 다른 시험장에서 응시하고자 할 경우 멀리 있는 감찰을 공공연히 姨從이라 칭하며 원하는 시험장으로 옮겨가 응시한다. 이는 제 어미를 바꾼 것이라 하겠다.³⁷⁾

시소는 향시의 경우 응시생의 거주지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나 자신과 친분이 있는 시관이 주관하는 시장으로 가서 응시하기 위해, 그 고을의 감찰을 자신의 이종이라 한 것이다. 錄名 조작과 환비봉을 두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바꾼 패륜’이라고 질타하였다면, 여기서는 ‘어머니를 바꾼 패륜’이라고 꾸짖고 있다.

IV. 시지 제출과 收券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1. 응시생과의 암호 약속

試紙 작성이 끝나면 시지를 제출한다. 뇌물을 쓴 응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시지를 정확히 알릴 방법이 필요했다. 그러기 위해 모종의 암호를 약속했다.

간단한 방법으로 시지의 행간에 암호를 써 놓거나 특정 부위를 칼로 새기는 따위의 시도가 있었다.³⁸⁾ 이 방법은 들통날 위험도 컸고, 전혀 엉뚱한 사람의 시험지를 청탁자의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그래서 뒤에는 科詩 첫 구절 몇 글자를 특정 글자로 시작하기로 합의하는 방법이 등장했다.³⁹⁾ 하지만 번거롭고 불확실하기는 매 한가지였다.

37) 尹椿, 『無名子集』 문고13, 「峽裏間話 科弊」, “前則陳試與雜赴者 或有容奸於一二所變通 而原榜則不敢生意 今則欲隨試官而赴他所者 公然以遐方監察 稱爲姨從而移赴 是則可謂換母矣”

38) 尹椿, 『無名子集』 문고13, 「科說 古今試官」, “今也則又以所謂關節爲疑晦而不用 直以所呈之第幾張 及所納之首句取之 有何勞哉”

묘안이 필요했다.

또 기묘한 수법이 새로 나왔다. 글자를 약속하거나 첫 구절을 들이지 않고서도 절대 실수하지 않을 방법이다. 試紙의 제목이 있는 부분 아래에 종이를 얇게 벗겨낸 뒤 작은 모래알 하나를 집어넣고 다시 풀로 붙이면 모래가 손가락에 걸려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 만져도 알 수 있다.⁴⁰⁾

시관이 손으로 시권을 넘길 때 은밀하고도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 밤낮도 이목도 가릴 것도 없고 엉뚱한 사람을 합격시킬 우려도 없다. 말 그대로 기발한 아이디어이다. 응시생은 제목을 미리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좋은 글을 지으려고 接을 만들 필요도 없고, 자신의 試紙을 알리기 위해 노심초사 잔피를 쓸 일도 없다. 응시자는 그저 시지 제목 아래 작은 모래알만 하나 붙이면 그만이다.

2. 呼授, 이름 외치며 시지 건네주기

응시생으로선 자신의 시지에 다양한 방법으로 암호를 숨겨놓고도 여전히 불안했다. 시관으로서도 약속된 답안지를 찾으려고 온 신경을 기울이고도 효과가 신통치 않으면 입장이 곤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방법이 呼授이다.

호수는 收券하는 과정에서 응시생이 자신의 이름과 자를 큰 소리로 외치면서 시지를 건네준다는 뜻이다. 암호 약속은 그나마 남의 눈을 의식한 것인데, 자신의 이름을 외치며 준다는 것은 부정의 노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이다. 법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39) 尹椿, 『無名子集』 문고13, 「峽裏間話 科弊」, “前則每欲行私 輒行關節暗標於文字及紙面之間 今則不用關節 直納首句 無誤中之慮 無礙眼之患”

40) 尹椿, 『無名子集』 문고13, 「科說 II」, “今科後有人來言又有新出奇妙之法 雖不言某字 不納首句 亦萬無一失 其法於試紙題間下 擧起紙面薄皮 納一小沙 復糊之則沙輒礙指 雖暗中摸索 亦可以知 試官每以手披券之際 妙理伏在沙中 無論晝夜及衆目所見 萬無誤中副車之慮云”

는 반증이다.

뿐만이 아니다. 응시생은 당당히 시관이 얹은 대청 위로 올라가 좌우를 휘저으며 더러 약속한 첫 구절을 확인하기까지 하고, 자신의 시권을 스스로 作軸하여 字號를 매긴 다음 收券官에게 맡기지 않고 시관과 말을 주고받았다. 심지어 ‘제 글을 아무 축 몇 번째 글자에 넣었습니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⁴¹⁾ 청탁의 사실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그에 따른 수궁할 만한 결과를 대놓고 요구하였던 것이다.

전에는 유생이 남몰래 내통했다 하더라도 감히 과장에서 대놓고 시관과 사사로이 말을 주고받지는 못했다. 지금은 대놓고 시관의 자를 부르면서 으르거나 부탁하는 말을 한다.⁴²⁾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수준에서 한참을 더나가 시관과의 결탁 사실을 은연중에 과시하는 듯한 말투인데, 자신을 반드시 합격시켜 주기를 은근히 종용하고 협박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부정의 만연상과 불감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3. 換秘封, 피봉 바뀌치기

제출 과정에서 시지를 바꿔치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 과거는 시지 겉면에 응시자의 성명, 생년, 거주지, 鄉貫, 四祖를 기록하기 때문에 무작정 시험지만 바꾸어 될 일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換秘封이란 부정이 생겼다. 시지는 아무렇게나 대충 작성한 다음, 비봉을 바꿔치기

41) 尹椿, 『無名子集』 문고13, 「科說 亂場之狀」, “儒生以其試券 自作軸填字 不委於收券官 與考官相語 至謂吾文納於某軸第幾字 而恣行廳上 或以句頭授受 此極矣至矣 蔑以加於此矣”

42) 尹椿, 『無名子集』 문고13, 「峽裏閒話 科弊」, “前則儒生雖暗地通情 而猶不敢直於場中與試官私語 今則直呼試官之字 加以恐喝叮囑之說 又於編次之際 騎驢直入試所 拔之納之 惟其所欲”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작성한 훌륭한 시지를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이다.

남의 합격을 훔친다는 의미에서 ‘竊科’라 불리기도 한다. 이 방법은 이전부터 행해지던 전형적인 응시생-시관 결탁형 부정 행위였다.⁴³⁾ 은밀하게 진행되어 뒷탈이 적다는 점에서 뇌물을 먹은 관원으로서도, 확실하게 합격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뇌물을 쓴 청탁자로서도,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애용되었다.

점차 竊科라고 불리는 이 파렴치한 부정행위에 전 시관이 연루되었다. 윤기가 전하는 당시의 한 장면이다.

전에는 換秘封이란 것이 모두 下輩의 소행이었는데, 지금은 시관이 직접 저지른다. (중략) 參試官 한 사람이 밤에 시권 하나를 들고 시권을 봉하여 놓아 둔 방에 들어와 시권 속에서 한 장을 뽑아내었다. (중략) 이렇게 뽑아내기를 서너 번 한 뒤에 지키는 자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자, 마침내 가지고 온 시권을 끼워 넣고 자신이 뽑아낸 시지와 피봉은 찢어서 소매에 넣어 돌아갔다.⁴⁴⁾

피봉을 훔치는 행위 그 자체로 매우 저속하고 비루한 것이므로 주로 아전이나 액레들의 전용 부정행위였다. 주로 응시자가 몰래 下吏들에게 부탁하여 남의 답안지 秘封을 도려내고 자기 이름을 써넣음으로써 남의 과거 급제를 훔쳤던 것이다. 윤기는 이런 행위를 두고 “담을 넘어 남의

43) 이 부정이 대대적으로 발각된 예가 숙종 25년(1699)에 발생한 己卯科獄이다. 기묘과옥은 『연려실기술』에서 한 조목으로 설정될 정도로 파문이 컸다. 이때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피봉 바꿔치기 사건의 전말이 ‘換封竊科’라는 이름으로 묶여 책으로 나오기도 했다. 『환봉절과』, 栖碧外史海外蒐佚本 9, 아세아문화사, 1990.) 이와 관련하여 禹仁秀의 「조선 숙종조 과거 부정의 실상과 그 대응책」(『한국사연구』 130호, 한국사연구회, 2005.)에 자세히 연구되어 있다.

44) 尹椿, 『無名子集』 문고13, 「峽裏閒話 科弊」, “前則所謂換秘封 皆是下輩所爲 今則試官自爲之 去年覆試 明將出榜 參試官一人 携一試券夜入 封置試券之房 抽出一張 守者曰此是某宅物 不可拔也 又抽一張 守者又如前言 至三四抽之後 守者不能堅執 乃納其所携 而裂其所抽之紙皮 袖之而還其所”

물건을 훔치거나 남의 무덤을 도굴하는 것보다도 심한 짓⁴⁵⁾이라고 신랄하게 질타하였다. 그런데 부정이 일상화 되어 사대부가 직접 '절도' 행위에 참여하였다. 관리의 윤리는 완전히 타락했다.

4. 外場, 과장 밖에서 작성하여 제출하기

收券 과정에 행해지는 최고의 부정 가운데 外場이 있다. 이 부정은 시지의 작성 자체가 아예 과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리싸움을 하거나 接을 이루고 말고 할 것도 없다. 밖에서 작성하여 곧장 시관에게 바치기 때문에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부정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試題가 미리 유출되어야 하며, 시험이 진행되는 과정에 과장 출입이 자유로워야 한다. 밖에서 들어온 시지를 시관에게 건넬 때 누구의 시지인지 밝혔음도 뻔한 사실이다.

사전에 온갖 협잡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이 복합형태의 부정도 처음에는 하인배를 시켜 은밀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점차 뻔뻔해져 나중에는 버젓이 들어가 시관에게 곧장 제출하는 형태로 변질되었다. 윤기는 “하배가 돈을 벌 길이 없어졌다.”⁴⁶⁾고 비꼬았다.

밖에서 작성한 시지를 들여오는 행위가 전혀 대수롭지 않게 취급되는 없었다. 아무래도 은밀한 눈속임이 여러 방향으로 모색되었을 터인데, 다음은 당시에 이루어진 外場의 한 장면이다.

시험이 끝나 科場을 파하고 나오면서 시관이 자랑하였다.

“이번 과거에는 外場이 전혀 없었다.”

객이 말하였다. (중략) “날이 저물어 햇불을 들여올 때 햇불 꾸러미 속도 수색 하겠습니까? (중략) 試紙에 답안을 써서 햇불 꾸러미 속에 넣어 들여와 어둠을

45) 尹椿, 『無名子集』 문고5, 「論科擧」, “甚至於私囑下輩 換易密封 以竊人之科”

46) 尹椿, 『無名子集』 문고13, 「峽裏間話 科弊」, “前則外場呈券者 猶欲揜人耳目 多費錢財 極其秘密 今則皆自外直入 有若陸庠之坐閭舍呈券者然 故下輩無得錢之路”

틈타 어지럽게 날려있는 시권 중에 던져 넣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作軸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시관은 멍하니 넋을 잃었다.⁴⁷⁾

외장은 위낙 사안이 큰 부정이라 이전에는 小科 정도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마침내 대궐에서 치러진 會試에서 버젓이 행해졌다. 더구나 이때의 외장이 다른 과거보다 쉬웠다고 소문이 났다. “구중궁궐 지엄한 곳에서, 성상이 지적에 계신 곳에서 마침내 감히 이처럼 방자하고 거리낌이 없으니 …… 고급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⁴⁸⁾라고 한 윤기의 통탄은 고사하고 오늘날의 눈에도 놀랍다. 외장도 점차 과감해져 밤새 외장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고, 이튿날 해가 중천에 뜬 후에 시험장 밖에서 곧장 시지를 들고 들어와 바치는 광경까지 연출되었다고 한다.⁴⁹⁾

5. 시권 제출자 바꿔치기

이 굵직한 부정의 와중에 소박한 형태의 부정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시권 제출자를 바꿔치기 하는 것이다. 조정에서는 시관들끼리 합격자를 미리 분배하거나 뇌물을 받고 특정 인물을 합격시켜주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방법을 강구했다. 그것은 응시자의 모습이 경화자제나 당

47) 尹椿, 『無名子集』 문고13, 「科說Ⅱ」, “今科 試官既罷場 出曰今番無外場矣 客有曰何以知之 曰吾終日出立廳頭 有出入者則皆令搜見矣 客笑曰今番外場者 吾亦多知之 何謂無也 曰何以納之 客曰日暮入炬時 亦搜見炬中乎 曰此則未及搜之 而日暮時則已成限後 雖入之 安能納之 客曰有是哉 子之迂也 書諸試紙 納諸炬束中而入之 乘昏投諸亂券中而作軸 此則誰知之 試官乃無然 然則外場亦無可禁之術矣 可謂末如之何也已”

48) 尹椿, 『無名子集』 문고13, 「科說 亂場之狀」, “文會試 設於仁政殿 無不以場外書納爲事 夫一二所試官設行之科 則近來外場固爲例事 而九重深殿之地 天威咫尺之下 乃敢若是放恣無忌憚 人皆謂殿庭外場 比他科尤易云 古今天下 安有如許之事乎”

49) 尹椿, 『無名子集』 문고12, 「後科說 科場之雜亂橫行」, “又設場翌日日高後 自場外持試券直入呈之”

과 주류 인물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를 합격시켜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정의 합격자 선발 패턴은 이내 드러났고, 응시생들은 이를 역이용했다. 허름한 시골 유생을 매수하여 자신의 시지를 대신 바치게 하는 한 것이다.

회시 때가 되자 大臣이 임금에게 특별히 명을 받은 시관이 되어 유생들로 하여금 직접 시권을 바치게 하였다. 이는 혹 편향적으로 인재를 뽑을까 우려하여 응시자의 모습을 보고서 취사선택을 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자 세도가 중에 약빨라서 의도를 짐작한 사람들은 시골 노인에게 시권을 바치도록 하여 합격하였다.⁵⁰⁾

V. 채점과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의 농간

1. 시지 빼돌리기와 시축 날조

試紙를 거두고 나면 본격적인 부정이 활개 친다. 먼저 시지를 모아 卷軸을 만들 때 첫 번째 부정이 행해진다. 試軸을 묶고 난 뒤에는 시지를 바꾸기 어려우므로, 권축을 묶기 전에 약속한 응시생의 시지를 미리 제1축이나 2축에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바꾸는 시지가 한두 장이 아니라는 데 있다. 시관들마다 각각 부탁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上試官이 따로 가져온 시권 두 장을 꺼내며 여러 시관에게 말하였다.

“어쩔 수 없어 이러는 것이요.”

다른 시관들도 모두 말하였다.

“그렇다면 저에게도 있습니다.”

50) 尹椿, 『無名子集』 문고13, 「科說 亂場之狀」, “及會試 大臣爲命官 使儒生親呈券 蓋恐或偏取 欲觀舉子貌樣而取舍之也 於是勢家之點而揣知其意者 乃使鄉曲老者呈之 而得擢其不知者”

다섯 시관이 각각 두 장씩 꺼낸 것을 합치자 한 軸이 되었다. 시령에 얹혀 있는 시권축 하나를 들어내고 그 시권축을 대신 집어넣었다.⁵¹⁾

혼자만 부정을 저질러서는 뒤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암암리에 상대의 부정을 서로들 목인하였다. 결국 시지 몇 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시축 하나를 통제로 바꿔치기 한 결과가 되었다. ‘함께 도둑질하고 같이 못된 짓을 하면 말이 새지 않는다.[共盜共淫者 語不泄]’⁵²⁾는 속담 그대로이다.

2. 성적 조작

시관의 위력이 결정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곳이 성적 채점이다. 그렇다 보니 시지 바꾸기와 더불어 가장 직접적이고 많은 부정이 개입된다. 성적 조작은 시지를 바꾸면서 이루어지기도 일췌였는데 “그 중에는 뽑아내졌다가 도로 집어넣은 것도 있었다. 그 시지엔 세 구절에 批點을 찍었을 뿐만 아니라 貫珠까지 하고 성적을 ‘三下’라고 썼다고 한다.⁵³⁾”는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시권축을 새로 만들 때 아예 미리 성적을 매겨

51) 尹椿, 『無名子集』 문고13, 「峽裏間話 科弊」, “今番則臨當詣闕之時 上試官出別置二張 謂諸試官曰此則不可不爲之矣 諸試官皆曰然則吾亦有之 五試官各出二張 合爲一軸 於是拔出架子中一軸而納之 其中有見拔而還推者 批點三句貫別而書三下云 此皆前之所無也 莊周揭跖之言曰 盜有五道 分均仁也 今此分利之甚均 毋亦以爲仁之道乎 且雖欲諱諸人 天下耳目 安可掩也 雖幸而免負國徇私之罪 獨不愧於心乎 獨不畏於殃及乎”

52) 尹椿, 『無名子集』 문고13, 「峽裏間話 科弊」, “今則公共爲之 諺所謂共盜共淫者 語不泄也”

53) 尹椿, 『無名子集』 문고13, 「峽裏間話 科弊」, “今番則臨當詣闕之時 上試官出別置二張 謂諸試官曰此則不可不爲之矣 諸試官皆曰然則吾亦有之 五試官各出二張 合爲一軸 於是拔出架子中一軸而納之 其中有見拔而還推者 批點三句貫別而書三下云 此皆前之所無也 莊周揭跖之言曰 盜有五道 分均仁也 今此分利之甚均 毋亦以爲仁之道乎 且雖欲諱諸人 天下耳目 安可掩也 雖幸而免負國徇私之罪 獨不愧於心乎 獨不畏於殃及乎”

놓은 시지로 바꾸었다.

통상적인 성적 조작도 횡행했다. 考査가 끝나갈 무렵에 시험관이 특정인을 떨어뜨리고 싶으면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기어코 억눌러 떨어뜨리는데, 심지어는 全篇에 批點이 수두룩한데도 三下나 次上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을 붙여주고 싶으면 점수가 아무리 낮아도 반드시 과격적으로 선발하여 비점이 전혀 없는데도 二上이나 二中이라고 쓰는 사례까지 있었다.⁵⁴⁾ 최종 성적 확정이 채점과는 아무런 상관 없이 시관의 임의로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시관의 성적 조작이 만연해져 나중에는 청탁한 응시자가 고과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에 직접 관여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두고 윤기는 “앞으로는 시관의 朱筆을 가져다가 스스로 자기 시권에다 등급을 써넣는 일이 생길 것이다.”⁵⁵⁾라고 개탄했다.

시관의 입김은 이목이 노출되는 講經에서 더 큰 힘을 발휘했다. 시관은 시험을 보이기도 전에 합격자를 미리 배분하여 내정해 두었다가 講經을 할 때에 공공연히 추켜 주거나 눌러버린다. 추켜 주려는 사람은 틀린 곳이 수없이 나와도 못 들은 체 칭찬하면서 높은 점수를 주고, 누르려는 사람은 강물을 터놓은 것처럼 시원히 외더라도 낮은 점수를 주고 또 文義를 꼬치꼬치 묻는다.⁵⁶⁾ 이렇게 하면 강경자의 이미지를 자신의 의도대로 만들 수 있는 한편, 자신의 평가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쉽다. 더구나 누르려는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애를 먹이면 강경하는 사람으로 선 적잖이 당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위축되어 강송과 대답에

54) 尹愔, 『無名子集』 문고5, 「論科擧」, “是故方其試抄之垂畢也 欲黜其人 則畫雖多 必抑而屈之 至有全篇批點而書三下次上者 欲升其人 則畫雖少 必超而進之 至有白文而書二上二中者”

55) 尹愔, 『無名子集』 문고13, 「科說 亂場之狀」, “後科則將取考官朱筆 自書等於其券”

56) 尹愔, 『無名子集』 문고5, 「論科擧」, “而爲試官者 已於科前 有所分排磨鍊 至其考講之際 顯加扶抑 於其所扶者 則雖瘡痍百出而闔眼帖耳 又稱贊引拔 於其所抑者 則雖若決江河而勒降其性 又強詰文義”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3. 當落 결과 유출과 시지 다시 들이기

시험이 끝나고 시지를 모두 제출한 뒤에도 방이 나붙기 전까지는 부정이 개입할 여지는 없지 않다. 성적이 매겨지고 당락의 윤곽이 드러나면 방이 걸리기 전에 그 결과가 미리 유출된다. 권세가는 試場의 아전들과 군졸을 매수한 다음, 노복들을 보내어 과장 안의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았다. 집안에 앉아서도 과거장 안의 흐름을 손바닥 보듯이 훤히 꿰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합격권에 들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즉시 다시 시지를 작성하여서 들인다. 이렇게 하여 설령 십수 번을 다시 작성하더라도 기필코 합격을 하고야 만다.⁵⁷⁾ 대소과를 막론하고 모든 시장에 만연한 풍경이었다.

시지를 다시 들여 합격하는 일이 잦아지자 과거가 끝난 뒤에는 으레 뒷얘기가 무성하였다. 아무와 아무는 몇 번을 연달아 올려 합격되었다 더러는 따위 소문이 도성에 과다하게 퍼졌으며, 당사자들도 굳이 숨기지 않았다.⁵⁸⁾ “과거 보는 날이 지났어도 합격자 발표가 있기 전에는 서울에서는 집집마다 시권을 써서 보내는 일로 분주하다.”⁵⁹⁾는 윤기의 진술은 과거 직후 서울 사대부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시지를 다시 작성하여 들이는 방법 외에 試所를 바꾸어 시지를 다시

57) 尹愔, 『無名子集』 문고13, 「科說 僂從及奴隸輩之出入科場」, “近來無論大小科 苟非窮儒之莫以周旋者 無不以僂從及奴隸輩 充送試所使喚與場中軍卒 以爲通外內探得失之地 故或有不辛而見落 則卽爲更寫以納 雖至十數次 必期入格乃已”

58) 尹愔, 『無名子集』 문고13, 「科說 僂從及奴隸輩之出入科場」, “以故科後 人言每每狼藉 以爲某某人皆幾次連呈而爲之云 而亦不隱諱 科科如此 有勢者其有不得中者乎”

59) 尹愔, 『無名子集』 문고13, 「科說 近來科擧」, “科日雖過 苟不出榜 則京中家家皆是寫送試券之事 人人如此 未嘗掩諱 故不勝冤而言之云”

올리는 방법도 있다. 예컨대 一所에서 합격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자신의 시험지를 빼들러 二所에 제출하여, 이미 入格한 사람의 것을 빼내고 자신의 것과 바꿔치기하도록 한다.⁶⁰⁾ 이런 모든 행위는 당연히 응시생과 시관의 결탁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부정이다. 이쯤 되면 과거는 오직 험잡과 결탁에 의해 결과가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논한 부정은 과거마다 갈수록 심하게 저질러졌다. 마침내 과거장은 갖은 부정으로 뒤범벅이 되고 말았는데, 순조 24년(1824) 갑신년 8월에 치러진 監試 초시의 장면은 그 양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합격자 발표를三更(밤11시~1시)에 하였다. 어두운 밤을 틈타 목적 달성을 용이하게 하고, 남의 이목을 피하고자 해서였다. 시관과 아전과 유생이 대청 위에서 함께 어지럽게 뒤섞여서 각각 자신이 쓰고 싶은 사람을 합격자 명단에 써 놓고 더 이상 秘封을 열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는 있으나 시권이 없는 자가 있었고, 시권은 있는데 비봉이 없는 자가 있었으며, 시권은 합격하였으나 합격자 명단에는 이름이 없는 자가 있었다. 그 문란함을 알 수 있다. 御覽 명단 중에 잘못 쓰거나 빠트리거나 중복하여 쓴 경우가 많아 승정원에서 推考를 청하였고 대신이 죄줄 것을 청하였으며, 諫官이 또 상소를 올려 上試官을 定配하고 副試官과 參試官을 모두 削職할 것을 청하였다.⁶¹⁾

60) 尹椿, 『無名子集』 문고14, 「記丙戌別試事」, “當寧二十六年丙戌春別試時 命取六百人 二所終場 纔懸策題 卽有呈券者 諸生固已忿之 而題又只懸於上臺 諸生叫呼不已 良久乃懸於下臺 而風動紙皺 細字隱見 諸生爭相牽掣 各欲詳視 遂至裂碎 於是大鬧而聞 競以瓦礫相投傷 一場大潰 踰垣奔迸……大臣以試官 巽軟請罷場 待場畢拿處 上從之 命試官則罷職 只於初場取二百人 試官以爲初場雖欲更考 落軸已無去處 將無以充數 乃送隸各處 令追後呈券 至出榜前自外來呈者 相屬不絕 一所聞之 無故效尤 亦爭追呈”

61) 尹椿, 『無名子集』 문고14, 「記甲申科事」, “當寧二十四年甲申八月監試初解時 一所尤甚 凡作姦之事 無所不有 無所忌憚 至其出榜也 乃以三更 蓋以昏夜 易爲其所欲爲而欲掩人耳目也 於是試官與吏隸與儒生 一併雜亂於廳上 各以所欲書者書於榜中 不復拆封呼名 故有名在榜中而無試券者 有有試券而無秘封者 有試券則入格而榜中無名者”

VI. 부정의 주변 풍경

1. 文儉와 都家

부정이 판치는 곳은 어디든 그 언저리에 기생하는 인물들이 나오게 마련이다. 앞에서 본 巨擘과 寫手, 대리시험을 쳐 주는 사람들 역시 부정의 언저리에 기생하는 사람들이다. 『무명자집』에는 이들 외에 낯선 이름이 눈에 띈다. 바로 文儉와 都家이다.

과거 날짜가 고시되면 권세가의 응시생은 공부에 전념하기보다 문장력이 있으면서 곤궁한 자를 찾기에 혈안이 된다. 곤궁한 문필가는 당장의 생계 때문에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이 곤궁한 문필가가 巨擘이다. 寫手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에 이르면 전문적 직업인으로 탈바꿈한다.⁶²⁾

문제는 권세가의 자제가 거벽과 사수를 직접 만나 거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제도가 문란해지고 풍속이 변했다지만 여전히 남의 이목을 무시할 수는 없는 현실이고, 권세가의 자제로서 거벽이나 사수와 직접 접촉할 경우 ‘가격 흥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당시 통념으로선 심상한 것이 아니다. 또 거벽과 사수를 중심으로 接이라는 팀을 만들어야 하며, 이 接에는 한 사람의 거벽과 사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요컨대 한 接에는 여러 명의 거벽과 사수는 물론이고 이들을 호위하는 무뢰배들까지 다양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들을 한 接으로 묶어 응시생과 연결시켜주는 기간꾼이 필요하다. 이들이 文儉이고, 문패의 거점이 바로 都家였던 것이다.

外場을 저지를 때나 當落의 결과를 미리 알고 시지를 다시 들일 때도

62) 李鈺이 立傳한 경상남도 함천의 柳光億이란 인물에서 그 전형을 볼 수 있다. 유광억의 기행은 강명관(2003)에 의해 조명된 바 있다.

거벽과 사수의 힘을 빌리지 않았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려운데, 정황상 그들이 미리 작성한 답안지에 가격을 매겨 거래하는 일도 문패들이 주선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요컨대 이 시기가 되면 부정이 조직적이고 세분화되면서 관련 인물들을 주선하고 원활하게 기획하는 전문 거간꾼들이 과거장 주변에도 등장하게 된 것이다.

2. 아전 및 羅將의 개입과 車夫稷

아전들은 조선조 행정의 전 분야에 걸쳐 실무를 담당하는데다 녹봉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부정에는 늘 그들의 부정이 개입되어 있었다. 과장의 부정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과장에서 아전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부정이 이루어지는 지점으로 시지 팔아먹기를 들 수 있다. 예조의 인장을 받아 지급하는 시지는 과장 응시생의 정원수에 맞게 준비된다. 앞에 서술했던 外場이나 다시 작성하여 들이는 따위 부정을 행할 때도 역시 아무 종이어나 작성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장이 찍힌 시지에 작성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가에서는 만일에 대비해 인장이 찍힌 정식 시지를 높은 값으로 暗買하여 미리 준비해 두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아전들이 이들에게 높은 값으로 시지를 팔아 돈을 챙겼던 것이다. 응시생의 정원수에 맞게 준비한 시지를 아전이 팔아먹는다면 과장에선 정작 시지가 부족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런 일이 빈발하여 정작 시험을 쳐야할 응시생이 시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금년 병술 重試 때의 일이다. 上(순조)께서 春塘臺에 親臨하시고 동궁께서 배석하셨다. 詩題를 내걸기에 앞서 시권을 나누어주었는데, 시권을 받지 못한 세 사람이 있어 글을 지어 올릴 수가 없었다. 이는 필시 吏隸輩가 훔쳐간 소치임이 분명했다. 그럼에도 시관은 끝까지 조사하여 찾아줄 뜻이 없었고 시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 역시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났다.⁶³⁾

시지를 팔아먹는 아전의 수는 점점 늘어났다. 급기야 윤기는 국가에서 시지를 전매하여 그 이익을 국고에 충당하고, 합격자는 제비뽑기로 정하는 편이 낫겠다고 자조어린 대안책을 터뜨렸다.⁶⁴⁾ 아전뿐만이 아니었다. 과장의 출입을 단속하고 질서 유지를 책임 맡았던 나장들 역시 부정에 개입하였다.

試券을 평가할 때 羅將輩가 수십 장의 시권을 들이밀면서 “이것을 합격시켜 주십시오.” 하였다. 시관이 꾸짖고 그들을 결박시키자, 나장이 큰소리로 외쳤다. “이번 과거가 공정하였다면 저희가 감히 이런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지금 세 시관께서 사육으로 한 방목을 배분할 때, 서찰 왕래와 찻 구질 써 들이기에 모두 저희가 심부름하였습니다. 여러 날 고생했거늘 저희만 이문이 없단 말입니까? 科賊에게는 해당 법률이 있는데, 저희들은 벌써 車夫稷를 맺어 놓았습니다.” 시관은 미친놈이라 하면서 쫓아내라고 명하였으나, 그들이 요구한 시권은 입격시권 속에 넣어두었다.⁶⁵⁾

과장의 나장들이 시관 專有의 부정이었던 換秘封에까지 깊이 개입되어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여기서도 눈에 띄는 이름이 있다. 車

63) 尹楮, 『無名子集』 문고14, 「記丙戌重試事」, “文官則先期納試券於政院 安御寶入場後頒給 各受而製呈 今丙戌重試時 上親臨春塘臺 東宮侍坐 將出題頒券而未受者三人無以製呈 此必吏隸輩偷去之致 而試官無充厥推給之意 未受者亦不敢有言而退 夫科法甚嚴 儒生之科 尚不可若是乖亂 況朝官之試券乎”

64) 尹楮, 『無名子集』 문고6, 「家禁」, “客有嘗爲余言科舉之不誠 而曰 吾有一策 可以有其名而無其弊 便於私而補於公 曰何 曰今買監試試紙以百錢 大科試紙以五十錢 此固爲士者身役 焉敢辭乎 今若使舉子 各以其數貫於索 以片紙書姓名繫於錢索呈之 視其姓名擢之 而若欲任其命數 則使場軍平鋪廣庭 以長竿鉤 鉤而取之 若古之藏鉤中園之戲 錢則悉付之度支經用 則舉子無買紙製寫之勞 試官無尋覓敲推之苦 各司無應辦支待之弊 而國用則錢勝於紙 豈不俱便乎”

65) 尹楮, 『無名子集』 문고12, 「後科說 科場之雜亂橫行」, “方其考券也 羅將輩以數十試券言于試官曰請以此入格 試官叱使縛之 羅將大言曰今科若行公道 則我輩何敢生此意乎 今三試官皆以其私分排一榜 書札之往來 句頭之錄納 我輩皆爲之矣 我輩累日勞苦 獨無所利乎 凡科賊有律 我輩已結車夫稷矣 試官曰狂漢也 命逐出之 而以其所請之券 置諸入格中 此後則下輩又當與試官分利矣 可歎亦可笑也”

夫穢이다. 나장의 부정 개입은 전적으로 시관의 부정에 바탕을 둔다. 그런데 떨어지는 우수리를 압전히 받아먹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시관을 헐박하여 자기들의 몫을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나장들끼리 돌림계를 결성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부정의 폭로에 단체 행동을 약속함으로써 조직적으로 부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데,⁶⁶⁾ 빌미를 잡힌 시관으로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3. 액례와 軍卒의 거들기

시관들이 부정을 저지를 때에 여건상 직접 하기 곤란한 부정이 많았고, 설사 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일일이 다 관여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부정에 액례와 군졸의 심부름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눈치 빠른 액례와 군졸들이 이 틈을 비집고 한 몫 거들었다. 대표적으로 外場과 같이 試紙가 외부에서 들어와야 하는 부정의 예를 들 수 있다. 이런 경우 과장에 배치된 액례들을 통해 은밀하게 시관에게 전달되는 것이 통상적인 경로였다. 그런데 점차 문란해져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면 외장자들이 직접 시지를 들고 들어가 시관에게 전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 때문에 액례들이 “이제부터 우리들이 돈 벌 길이 없어졌구나.”라고 한탄했다고도 한다.⁶⁷⁾

그러나 위와 같은 것은 아주 손쉽고 가벼운 예이다. 액례들은 보다 규모가 큰 부정에까지 끼어들었다. 시지를 거두어들인 후부터 합격 발표까지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시권을 훔쳐 응시자들에게 되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試紙를 다시 작성해 오게 하여 합격하게 도와주는 것이었

66) 차부계의 성격과 실상은 관련 기록이 없어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앞으로 추적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67) 尹椿, 『無名子集』 문고12, 『峽裏間話 每經一科』, “又前此外場者多費錢 以圖其出入 而今則自外直持試券入呈 人皆笑而見之 下輩言我等自此無得錢之路云”

다. 서둘러 지은 과시를 손보아 정리할 수 있고, 아예 다른 시지로 바꾸어 제출할 수도 있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응시생으로선 요긴한 부정이었다. “一所의 시관이 뽑아놓은 시권 30장이 합격자 발표 때가 되어 갑자기 사라졌다. 이것은 시종과 노비들이 농간을 부린 것이었다. 그리하여 급히 30명에게 통지하여 화급히 다시 써오게 해서 모두 합격자 명단에 올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⁶⁸⁾라고 한 것으로 보아 효과 역시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외장자의 시지를 시관에게 건네는 것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신속하고 은밀히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챙기는 보수도 두둑했을 터이다. 액례들이 시지를 훔치는 행위는 점점 과감해졌다.

이때 觀光을 한 자들이 많게는 4,5만 명에 달하는데, 그 중에 掖隸輩들이 훔쳐낸 시권이 절반이나 되었다. 그러므로 막 시권을 거둬 평가를 하기도 전에 시권을 등에 지고 쫓겨나서 나서는 자가 있었다. 시골 유생이 마침 그것을 발견하고 빼앗아 몇 장을 살펴보고서 분노에 겨워 그를 매질하였더니, 그 사람이 도망가서 도리어 향유를 고소하여 시권을 훔친 죄목인 偷試券을 덮어씌웠다.⁶⁹⁾

부정에 한몫 거들기는 하급 軍卒 역시 마찬가지였다. 액례와 군졸들의 부정은 부정의 최일선에 자리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때문에 도리어 시관의 부정보다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래서 시관에게 돈을 무수히 쓰기도 한 장의 시권도 올리지 못한 자가 발생하는 반면, 試紙와 文筆도 지니지 않고서 액례나 군졸에게 겨우 15문의 돈을 써서 시권을 바친 자도 생겨나게 되었다.

이들은 당락의 결과를 알아보아주는 작은 심부름에서부터 몰래 환비

68) 尹椿, 『無名子集』 문고13, 『科說 近來科舉』, “一所試官所取三十張 臨出榜忽失之 此僮隸輩之所換弄也 乃急使人通于三十人之所 使之急急更寫以來 俱得參榜云”

69) 尹椿, 『無名子集』 문고12, 『後科說 呈券時諸般作弊』, “是時觀光者 多至四五萬 而其試券爲掖隸輩所偷出者居半 故總收券未及考 而有負出關門者 鄉儒適見而取看數張 怒而毆之 其人逃走 反訴鄉儒 加以偷試券之罪”

봉의 농간에까지, 한편으로는 시관과 아전의 지휘 아래 한편으론 시관과 아전 몰래 제 주머니를 따로 차고 잡다한 부정을 저질렀다.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과장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윤기의 말마따나 기절초풍할 노릇이다.⁷⁰⁾

4. 시골 유생의 편승

부정은 눈 먼 이가 아니라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버젓이 행해졌기 때문에 눈차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은 呼受 따위의 부정은 심심찮게 보였고, 기회를 노려 그 부정에 편승하기도 했다. 『무명자집』에는 시골 유생 이야기가 실려 있다. 京華의 유생이 매년 천막 아래 이르러 아무의 이름을 부르고 시권을 주면 그때마다 어김없이 저쪽에서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시골 유생이 보았다. 그가 春塘臺 親臨 庭試를 치를 때 자신도 그 곳에 가서 다른 이가 불렀던 이름을 부르자 아니나 다를까 안에서 액례가 뛰어나왔고, 곧장 자신의 시권을 주어서 과거에 합격하였다고 한다. 코미디의 한 토막 같은 이야기이다. 아래도 비슷한 이야기이다.

금년 庭試 초시 때, 어떤 시골 유생이 과장 안을 다니다가 한 接에서 머리를 모으고서 다투어 쪽지에 첫 구절을 쓰는 것을 보았다. 틀림없이 시관에게 바칠 것이라고 여겨 즉시 첫 구절을 하나 외워 시권에 써서 올렸는데, 정말로 합격자 명단에 오르게 되었다. (중략) 당시에 시골 유생이 합격자 명단에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 사람만은 여기에 올랐다.⁷¹⁾

70) 尹楮, 『無名子集』 문고12, 「後科說 呈券時諸般作弊」: 有客來傳鄉人所爲 多可笑 有費錢無數而卒不得一呈者 有不持試紙 不帶文筆 而只以十五文呈券者 蓋無勢而有錢者 見人之連呈而欲效之 請于一卒 卒曰若以十五貫與之 則當知其立落而告之矣 其人即與之 卒伴持試券而入 即摘其密封以授之 更以一張與之 則又摘而來 限輟場乃已 此則多費錢而不得一呈者也 又有一人以十五文與卒 使拔他人所呈中一張而來 即刮其密封而書自己之名以呈 此則不持文筆試紙而呈券者也 世變可謂無所不有矣 豈非絕倒處乎

71) 尹楮, 『無名子集』 문고13, 「科說 鄉儒之場內通情」, “鄉曲之無勢者 亦有以小

앞의 춘당대 정시를 훔친 시골 유생과 꼭 같은 유형이지만 이번엔 첫 구절을 써서 바치는 부정에 편입한 경우이다. 『무명자집』에 이런 류의 이야기가 여러 꼭지 실린 것으로 보아 웃지 못 할 이런 일이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VII. 맺음말

試官舉子處心同	시관과 거자가 심보가 같아
徇欲忘公作弊風	공도 잊고 사욕 따라 부정을 저지르네
廳廉庭軍皆耳目	겸종이며 군졸들은 정보통이고
字標刀擦捻關通	글자 표시 칼 자국은 연통한 것일세
句頭錄納仍傳札	첫 구절 베껴 들이고 서찰로 알려주교
場外書呈或換封	밖에서 지어 들이거나 비봉을 바꾸네
代入預題多巧詐	대리시험 시제 유출, 속임수가 많은데
誰將此語徹宸聰	이런 사정을 누가 성상께 아릴까 ⁷²⁾

윤기가 과장의 농간을 읊은 시이다. 69세 되던 해에 지은 작품으로 추정되는데, 이해는 순조 9년(1809)이다. 이 한편의 시에 본고에서 살펴본 부정들이 대거 망라되어 있다. 시관에서 액례까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있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조정 대신들 중 누구 하

黠而得利者 年前春塘臺親臨庭試時 有鄉儒偶見一儒生每至布帳下 呼某名授試券則輒應而受入 於是心揣其必有巧焉 乃至其所 以其所呼之名呼之 則果應而來 即以渠試券授之而竟中第 蓋其人乃勢家之人 而入之於布帳之內 使之通情者也 聞呼其名 不知他儒之傍見而效其爲也 以爲渠之主人而通之於命官 以至於登第也 又今年庭試初試時 有鄉儒行於場中 見一接中聚首爭書首句於小紙 意其必將納於試官 即誦其中一首句 寫於其試券以呈之 果參榜 蓋試官只見錄納之首句 並皆收之 不知他人之竊之故也 此時鄉儒鮮得與焉 而此人獨參 此等事皆可笑 聊記之 使後人知今日所謂科舉之模樣也”

72) 尹楮, 『無名子集』 시고6, 「又詠科場弄奸」.

나도 임금에게 아뢰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였다. 고관세족들은 부정의 끈을 통해 은밀하고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처럼 19세기로 접어들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부정이 이루어졌고, 시관과 응시생은 물론 아전에서 액례들에 이르기까지 관련 직무 종사자 전 계층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루되어 있었다.

관료제 사회의 행정 관료를 선발하는 과거제의 부정은 심각했다. 심각한 만큼이나 선각적 지식인들에 의해 긴급한 경고등이 누차 작동되었다. 그러나 끝내 어떠한 개혁적 조치도 단행되지 않았다. 조선 행정의 중추신경은 부정에 대한 불감증으로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말초신경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었다는 반증이다. 그 말로를 『매천야록』과 『백범일지』 등에 기록된 19세기 말 과거제의 타락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정을 통해 立身한 관료가 걸어가는 길이 正道일 것인가? 19세기에 이루어지는 관료들의 비리와 탐학, 서리들의 갈취와 횡포, 매관매직 따위 사회 전반에 걸친 제 모순은 결국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이루어진 과장의 부정을 통해 충분히 예견된다.

요컨대 윤기가 남긴 과장의 부정 행태는 ‘우선 이를 기록하여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날의 이른바 科擧의 양상을 알게 하고자 한다.’⁷³⁾라고 한 고백처럼 그 자체로 당시 양반 사회의 이면을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 리포트이자 향후 19세기 관료 사회의 모순을 미리 내다보는 창이라 하겠다.

<參考 文獻>

『正祖實錄』

『환봉절과』, 栖碧外史海外蒐佚本 9, 아세아문화사, 1990.

朴趾源, 『燕岩集』, 한국문집총간 252, 한국고전번역원.

李 翼, 『星湖全集』, 한국문집총간 199, 한국고전번역원.

丁若鏞, 『與猶堂全書』, 한국문집총간 285, 한국고전번역원.

강명관, 『조선의 뒷골목 풍경』, 푸른 역사, 2003.

김병건, 『무명자윤기 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안대회, 『선비답게 산다는 것』, 푸른 역사, 2007.

우인수, 「조선 숙종조 과거 부정의 실상과 그 대응책」, 『한국사연구』130호, 한국사연구회, 2005.

이규필, 「무명자 윤기의 의식세계 고찰」, 『대동한문학』 36집, 대동한문학회, 2012.

이원호, 『조선시대 교육의 연구』, 문음사, 2002.

이유나, 「영조대 과거제 운영의 폐단과 그 대책론」, 국민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73) 尹楮, 『無名子集』 문고13, 「科說」, “聊記之 使後人知今日所謂科擧之模樣也”

Abstract

Disorder and cheating of 18~9th century's Gwageo(the highest-level state examination to recruit ranking officials) - focused on 『Mumyungjajip』-
/ Lee Gyu Pil*

This study considers disorder and cheating of 18~9th century's Gwageo(the highest-level state examination to recruit ranking officials) by types according to a time order, and approaches the actual circumstances.

At the time, the class of Yangban(gentry) was expanded and earthy. This phenomenon was interlinked with the rise in competition rate of Gwageo, so the Gwageo system became disorder disorderly and officer's qualification was lowered. Bribe and request was rampant, there was the leaking of test questions before the examination or successful candidate had already been nominated. There were all kinds of cheating on an examination, for example, fight over a position, cheating, proxy examination, team examination paper writing, change of examination site, exchange of examination papers, making and submission out of examination site.

On the way of examination paper's submission, conspiring with Proctors, many candidates exchanged secret codes suggested the pass by make requester's name known, intercepted others' success by changing test papers. After th test time they bribed Proctors, exchanged the examining papers by the bundle and fabricated grades and readjusted success or failure outflowing the results.

These illegalities were involved with not only Proctor, but also people of every class, such as poor literary persons, government officials and soldiers, administrations bond servants. To sum up, the field of 18~9th century's

Gwageo(the highest-level state examination to recruit ranking officials) was connected with people of every class, across the whole course form notification of examination to announcement of a successful candidate.

Yunki's documentary on Gwageo's disorder and cheating is not only vivid field report, but also window which foresee bureaucratic society's contradictions of 19th century.

【Key words】 Gwageo(the highest-level state examination to recruit ranking officials)'s disorder, bribe and request, nominating successful candidate, cheating, fabricating grades and readjusting success or failure

* Sungkyunkwan University Daedong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 gdfeel@hanmail.net